

2019년도 제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5. 2.(목요일), 9: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호갑 위원, 정태호 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4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600건(안건번호 제2019-27148호~28922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PC조립과 음악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홍보 게시물 2개 안건(제2019-27150호~27151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음원파일 1개 안건(제2019-27152호)은 부결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4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사이트명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사이트명, 제품명, 프로그램명과 국내 배급 회사명에 대해서는 비실명 처리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사이트명이나 제품명 등에 대해서는 비실명으로 처리하여 공개하는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사이트명, 제품명, 프로그램명과 국내 배급 회사명은 비실명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27148~28922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3,600건임
안전번호 제2019-27148호는 일본 가수의 앨범 전체를, 안전번호 제2019-27149호는 일본드라마 DVD에 포함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린 후 게시자 자신이 댓글에 링크를 설정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링크를 클릭하면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하여 음악과 영상을 감상할 수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19-27148호~27149호 게시글을 작성하고 댓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올라간 사이트에 몇 차례 시정권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사이트에 시정권고 공문이 수 회 발송되었다고 답변함
 - B 위원 : 기존에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한 후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 되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사이트에서 공문 수신 후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하였음
다만 '□□'사이트에서 작성되는 글이 모두 익명으로 작성되어 동일 게시자가 지속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음
- A 위원 : '□□'사이트에 대해 기존에 심의했던 선례가 있고 동일한 사안이라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27148호~27149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27150~27151호는 민원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선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카페에 PC조립과 음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준다는 홍보물을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을 직접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도 확인되지 않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27150호~27151호 PC조립과 음악 작업 프로그램을 설치해준다는 홍보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의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법복제물등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프로그램을 설치해준다는 정보에 대해서만 확인이 되고 게시물에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불법복제물등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결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27150호~27151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27152호는 카카오톡 이용자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 수 개의 음원파일을 공유한 사안임
(민원인이 제출한 캡처자료를 보여주며)민원인이 제출한 자료이며,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한 화면과 음원파일의 재생화면은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19-27152호 커피 프랜차이즈 오픈채팅방의 음원 공유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오픈채팅방의 음원 공유 게시물에 대해 전문위원은 부결로 검토하였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을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기에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결로 검토한 것이 맞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증거수집 자료가 부족한 것이 부결로 검토한 주된 이유이고 ‘◆◆◆’ 점주들만 가입할 수 있는 채팅방인데 시정권고를 했을 때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됨
과거 전체심의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가결했던 오픈채팅방은 대화참여자 수가 500명이 넘었는데 검색 및 가입이 자유롭고, 오로지 불법복제 음원파일 공유를 목적을 개설된 것이었고 사적인 대화는 금지되어 있었음
반면 본 건 채팅방은 불법복제물 공유가 주된 목적이 아니며, 대화참여자 중 한명이 음원파일을 여러 개 올리고 있음

- B 위원 :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한명이 올린 음원 파일에 대해서만 삭제할 수 없고 다른 참여자들이 나눴던 대화까지 모두 삭제되는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카카오’에서는 채팅방에 있는 특정 게시물을 선별하여 삭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함
보호원이 시정권고 공문을 ‘카카오’에 발송하고 ‘카카오’가 이를 이행하게 되면 해당 채팅방을 폐쇄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함

- B 위원 :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오픈채

팅방에 올린 파일 이외에 다른 이용자가 올린 불법복제물을 확인할 수 없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 다른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호원의 조사 담당자의 해당 채팅방 입장이 거부되어 증거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음
보호원은 우리 심의위원회에 불법복제물등의 전송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이른바 '3단계 채증'을 제출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수 개의 음원파일이 공유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는 있지만, 해당 MP3 파일의 다운로드 화면과 파일 재생화면은 존재하지 아니함
기존 시정권고 가결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예를 들어 '◆◆◆' 가맹점주 100명이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 한명이 일탈행위를 하면 100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이 폐쇄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A 위원 :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기존 시정권고는 3단계 채증을 전제로 시정권고 공문이 발송되었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3단계 채증이 이뤄지지 않았음
민원인이 실제로 음원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한명의 일탈로 인해 대화방 전체가 폐쇄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는 부결

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부결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27152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28922호는 제2019-46회 1분과위원회에서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페이지에 게시된 프로그램이 평가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으로 재상정할 것을 요청한 사안임
(진술청취 보고서를 제시하면서)보호원 심의팀 직원이 '△△△△△△'에 확인을 하였는데, 심의안건의 컴퓨터프로그램이 권리자가 이용을 허락한 무료 평가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19-28922호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프로그램 무료 다운로드 웹페이지에 게시된 프로그램이 평가판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국내 판매사인 '△△△△△△'에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고 한 사안임
국내 판매사에 추가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무료 다운로드 웹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료나 프리버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취지의 사실관계가 보충되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C 위원 :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28922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27153호~28921호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 음악, 만화, 컴퓨터프로그램, 게임, 영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전번호 제2019-27153~2892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음악, 프로그램, 영상물 등은 불법 복제물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C 위원 :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27153호~28921호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251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만장일치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27150호~27152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27148호~27149호, 제2019-27153호~28922호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254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 3,343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5. 9.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호갑

위원 정태호